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제출년월 : 2024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기획예산과-12353, 2023.10.13.)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정비, 기타 오탈자 수정 등 자체발굴 정비과제와 누락되었던 기획정비과제로서 일괄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49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현행화
- 나. 띄어쓰기 정비
- 다. 기타 오탈자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세무1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의약과 13개 부서와 개정사항 협의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목) ~ 2. 21.(수)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한다.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7호”를 “제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른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체납 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으로 한
다.

제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각 호”를 “각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
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선정 (신
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를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도하며,”를 “유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부의하는”을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를 “그 회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국적법」 제3조”를 “「국적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로,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를 “「국적법」 제4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 회계법」 제18조”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민법」 제32조”를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북구(이하“구”라 한다)”를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 중 “(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 라 한다)”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각각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의”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

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창의마일리지제)”를 “(창의마일리지제)”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21조의3제4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4항”을 “제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와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을 “「자동차등록령」 제5 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세법」 제4조”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변호사법」 제90조”를 “「변호사법」 제90조”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 3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로 한다.

제10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의3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북구(이하“구”라 한다)”를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은”를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청년발전”을 “청년 발전”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을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16조제2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민법」 제32조”를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민법」 제32조”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특별시 성북

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2년 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수의사법」 제17조”를 “「수의사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16조제1항”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4항”을 “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의사법」 제21조”를 “「수의사법」 제2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성북강북 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되는”을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하였거 나”를 “수행하였거나”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적합 하지”를 “적합하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거주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상맹방리 266-7”을 “상맹방길 398-4”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설립사실 통보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

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립사실 통보서”를 “설립사실통보서”로, “정하여”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탈퇴) 원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이하 “가입(탈퇴)원서”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등”을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세”를 “협의회에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를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의결 기관의 의결 절차”로,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를 “제명 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 대상자”로, “의결전”을 “의결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9인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위”를 “협의회회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기관”을 “설립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수속회원”을 “소속회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에 제한)”을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을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사”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을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을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란 중 “220연대 3대대장”을 “220연대 1대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별표 1의 통신지원반란 중 “행정지원과 통신실”을 “홍보지원과 통신실”로 한다.

별표 2의 상황실란 중 “복지행정담당주사”을 “민원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지원”을 “따른 지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포상)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를 제8조(시행규칙)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북한이탈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를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7%”를 “7”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을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윤리의식”을 “윤리 의식”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리랑시네센터(이하“시네센터”라 한다)”를 “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터”라 한다)”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별표1]기능 및 위치”를 “[별표 1] 기능 및 위치”라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별표2]사용료”을 “[별표 2] 사용료”이라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별표3]수강료”을 “[별표 3] 수강료”이라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u>지원</u> 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 ----- ----- ----- ----- <u>지</u> <u>원</u> 할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u>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u>	7. 「기초연금법」에 따른 <u>기초연금 수급(권)자</u>
8.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한부모가족지원법」----- ----- 「 <u>다문화가족 지원법</u>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u>제3조제1호</u> 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u>제3조제1항제1호</u> ----- -----. ----- ----- -----.
② <u>제3조제7호</u> 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② <u>제3조제1항제7호</u> ----- -----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 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 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 다. ③・④ (생 략)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illegible]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
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항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
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환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을 준용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

-----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조사실시) ① -----

관계공무원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 체납처분-----

-----.

제9조(준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u>생활보장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 ----- -- <u>생활보장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u>사회복지</u> 에 관한 주요사항 1.·2. (생략)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4. (생략)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생략)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기능) ----- 각 항-----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1.·2. (현행과 같음) 3. ----- 선정 (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4. (현행과 같음) 5. ----- 유도하는 ----- 6. (현행과 같음)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 성북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제6조(회의) ① ----- ----- 그 회의의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u>10일전</u>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생략) ③·④ (생략) 제11조(운영세칙) 이 <u>조례</u>에 <u>규정된 것</u>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 -----. 1. ----- ----- -- <u>10일 전</u>-----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 <u>조례에서 정하는 사항</u> ----- ----- -----.
---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1조(목적) -----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3조----- ----- ----- ----- ----- ----- ----- ----- -----.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생략)

나.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21조(다문화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권주간에 다음 각 호의 성북구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적법」 제3조 -----

2.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나. 「국적법」 제4조-----

제21조(다문화인의 날 행사)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다문화인의 날”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	--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4. (생략)	제1조(목적)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제2조(정의) ----- -----. 1.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② (생략)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4조</u>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u> ----- ----- ----- ----- ----- -----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② (생략)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u>법 제35조제2항</u>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u>「민법」 제32조</u>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생략) ③ (생략)	-----. 제5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u> ----- -----.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민법」 제32조</u>-----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에 의한 수급권자와 그 가족	2.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 <u>아동복지법</u> 」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 「 <u>아동복지법</u> 」 제44조의2----- -----. ② ~ ④ (현행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제1조(목적) -----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제29조----- ----- ----- ----- ----- -----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제9조-----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생략)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 6. (생략) ③·④ (생략)	----- --.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5.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1조(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3. (생략) ③ ~ ⑤ (생략)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같음) ② ----- ----- -----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 ----- ----- ------(이하 “협의회”라 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다양	제1조(목적) -----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

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고 의사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
주하고 있는 11세에서 12세까
지의 어린이거나, 초등학교 5~
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성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
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를 말한다.

2. (생략)

3. “학교”란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
관을 말한다.

제4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
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 수를 각각 30명 내
외로 구성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 「초·중등교육
법」 제2조-----
-----.

제4조(의원정수) -----
-----(이하 “의원”이라
한다) -----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청소년기본법</u> 」 제3조제1호----- ----- -----. 2. ~ 4. (현행과 같음)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 「 <u>아동복지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 -----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11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 ----- ----- ----- -----.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생략)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	제2조(정의) ----- ----- 1.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2. (현행과 같음) 3. ----- ----- --- 「초·중등교육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조----- -----.
--------------------------------------	--------------------------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이용료)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생략)	제13조(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 4. (현행과 같음)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u>산사태 취약지역</u>	<u>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산사태취약지역</u> -----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
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
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
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
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등을
포함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
지)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
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
을 때에는 심의요청 하여야 한
다.

-----.

제2조(설치) -----
----- 산
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제3조(기능) -----
-----.

1. -----

- 산사태취약지역 -----

2. 산사태취약지역-----

-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
지) ① ----- 산사태취약지역
의 -----
-----.

②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u>산사태 취약지역</u>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산사태 취약지역</u> 지정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 ----- <u>산사태취약지역</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 ----- ----- ---- <u>산사태취약지역의</u> ----- -----. ② (현행과 같음)
---	--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u>」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	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60조제3항----- ----- ----- -----. 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⑤ (생략) 제3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	--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제1조(목적)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

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
정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성북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성북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
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

가. -----

----- 「국
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
정된 것

나. ~ 바. (생 략)

2. ~ 7. (생 략)

제7조(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
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에 대하여는 종합적
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④ (생 략)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
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관한 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의 검토) ① -----
----- 1개월 -----

-----.

② -----

1개월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
----- 각 1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사항) ① ----- 다음
각 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사기준) ① (생략)	제15조(심사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1조(상여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1조(상여금의 지급) ----- ----- ----- ----- 「지 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9조----- --. ----- ----- ----- -----.
제24조(창의마일리지) ① ~ ③ (생략)	제24조(창의마일리지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한 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달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 ----- ----- ----- ----. ----- ----- ----- ----- 제21조의2제4항 ----- ----. ② ----- 법 제36조의3와 시행령 제21조의2----- ----- ----- -----.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2. (생략)

④ (생략)

③ ----- 법 제36조의3-----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보
지교육국장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생략)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 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선 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 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② ----- ----- ----- -----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 다)----- ----- -----.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u>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 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 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 거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자동차등록 령」 제5조제2항----- ----- -----

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
----- 「지방세법」 제4
조 -----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변호사법」 제90조 -----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3. (생략) ④ (생략)	----- -----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생략)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현행과 같음)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 ----- ----- ----- ----- -----.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

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4.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 제2항 · 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20.5.14, 개정 2021.5.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3. 4. (현행과 같음)

②

1. -----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항제2호의2-----

-----.

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
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
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3. · 4. (생 략)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
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
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2024
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
에 따른다.

1. ~ 3. (생 략)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
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
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

-----.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조례」-----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
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
조-----

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
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
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
2백원으로 한다.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
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
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
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
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
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
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
.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지방세
법」 제104조제3호-----

-----.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
한 세율의 경감) -----

서울을 적용한다. 다만,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u>지방세법</u>」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u>지방세법</u>」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제10조의3(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49조제1항제2호 ----- ----- ----- -----. 1. 「<u>지방세법</u>」 제13조제5항제4호----- ----- 2. 「<u>지방세법</u>」 제13조제5항제4호----- ----- 제10조의3(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 ----- ----- ----- ---
---	--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u>성북구</u> (이하	제3조(위치) ----- ----- <u>성북구</u> (이하

<u>“구”라 한다</u>)에 둔다.	<u>“구”라 한다</u>)-----
-----------------------	-----------------------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등) ①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 ----- ----- ------(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u>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u>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 ----- <u>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u> ----- -----.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u>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u>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 <u>청년 발전</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① · ② (생략)	제14조(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별표(부상금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생략)	제2조(정의) ① ----- ----- ----. 1. -----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현행과 같음)

2.·3. (생략) ② (생략)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③ (현행과 같음)
--	--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 ----- -----

한다. 3.·4. (생략)	--. 3.·4. (현행과 같음)
-------------------	-----------------------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성북구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 -----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4. 「민법」 제32조----- -----
제24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24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③·④ (생략)	----- -----. 1. 「민법」 제32조-----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③·④ (현행과 같음)
---	---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

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
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다.·라. (생략)

마.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
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
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
의 조직 또는 단체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
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
한 조례」 제2조의 단체

아. (생략)

6. ~ 9. (생략)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
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
적경제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
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
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
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
례」 제2조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특별법」 제9조-----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
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
조-----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
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
한 조례」 제2조-----

아. (현행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
년마다 -----

-----.

-----.

제11조(지도·감독) ①·② (생략)	제11조(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③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우선구매 지원) ① ~ ③ (생략)	제12조(우선구매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④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② (생략)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③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수의사법」 제17조-----

을 말한다.

9. (생 략)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

9.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호서식-----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 영 제16조제1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 ⑤ (생략)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6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 규칙 제21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의사법」 제21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를 하되, <u>영 제5조</u>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u>법 제45조</u>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 ----- ----- <u>영 제6조</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u>성북강북교육지원청</u> 교육장 4. ~ 8. (생략)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u>성북강북교육지원청</u> ----- 4. ~ 8. (현행과 같음)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 되는</u>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u>수행하였거나</u>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u>적합하지</u>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u>해당되는</u> ----- ----- --. 1. ----- ----- -- <u>수행하였거나</u>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u>적합하지</u> ----- -----
--	--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의 범위) ① <u>거주 외국인</u>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u>거주외국인</u>-----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거주 외국</u> <u>인의</u>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 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 ----- <u>거주외국인</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u>지역내</u>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 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성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 화 주간으로 정한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 <u>지역 내</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② (생략)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 한 절차 등은 「 <u>서울특별시 성</u> <u>북구 포상조례</u> 」에 따른다.	③ ----- ----- 「 <u>서울특별시 성</u> <u>북구 포상 조례</u> 」-----.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 수련원의 위치는 강 원도 삼척시 근덕면 <u>상맹방리 2</u> <u>66-7</u> 에 둔다.	제3조(위치) ----- ----- <u>상맹방길 3</u> <u>98-4</u> -----.
제13조(사용제한 및 퇴장) ① (생	제13조(사용제한 및 퇴장) (현행

략)	제1항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원 사용자에게 대하 여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 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 등) ----- ----- -- <u>별표</u> ----- -----.
[별표1] 수련원 시설 사용료	[별표] 수련원 시설 사용료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협회의 가입금지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예산·경리 또는 물품출납업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 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 외한다) 4. ~ 9. (생략) ②·③ (생략)	제3조(협회의 가입금지 공무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회의 설립) ①·② (생 략)	제4조(협회의 설립)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	③ ----- 별지

사실 통보서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시정·보완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립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가입 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 ---- 설립 사실통보서-----

-----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절차 등---

② -----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이하 “가입(탈퇴)원서”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
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
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
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
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
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
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
원) ① 협의회에는 대표자 1인
과 9인 이내의 협의위원을 둔다.

② ~ ④ (생략)

⑤ 협의회위 대표자와 협의위원
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
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생략)

④ -----
----- 변경 등

--- 협의회에서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

----- 의결 기관의 의결 절차-----
----- 제명 의
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
까지 제명 대상자-----
----- 의결 전-----

---.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
원) ① -----
-- 9인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이의신청)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략)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생략)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에 제한) (생략)

제9조(이의신청) ① -----
----- 소속공무원 중 -----

-----.

② -----
----- 설립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사무기록 -----
----- 소속회원 -----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현행과 같음)

(생 략)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 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3.(생 략)

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운영에관

(현행과 같음)
「 <u>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회의 대표자
○○○(서명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3.(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생 략)

[별지제4호서식] ○○공무원직장 협의회가입(탈퇴)원서

(생 략)

위 본인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 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 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무원직장 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 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현행과 같음)

위 본인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u>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u> 교육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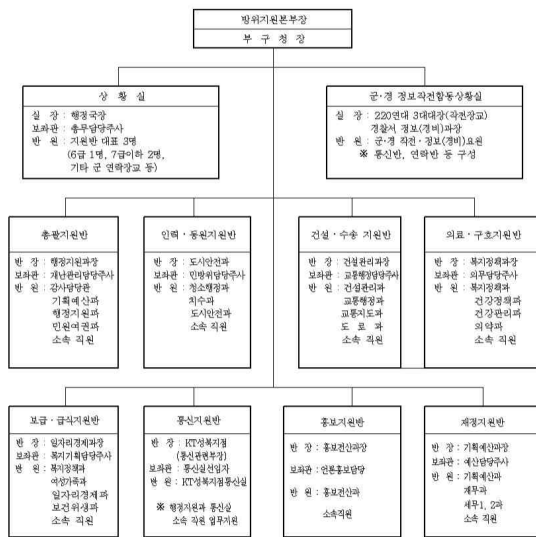
장

3. ~ 14. (생 략)

④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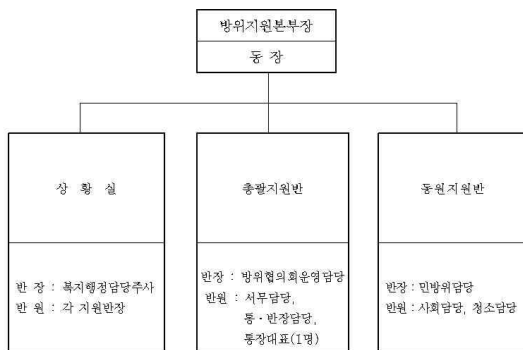
[별표 1] <개정 2016.3.1>

성북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신설 2008.12.29>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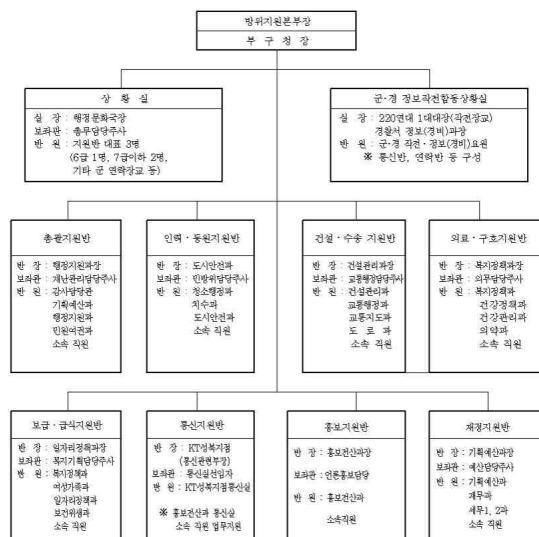
청

3.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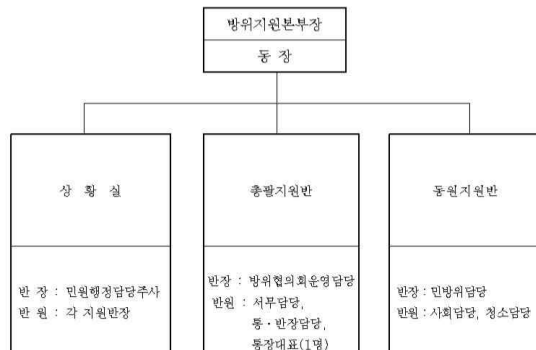
[별표 1] <개정 2016.3.1>

성북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신설 2008.12.29>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41.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 ----- ----- ----- ---. 제5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u>다른 지원</u>을 하지 않는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 ----- ----- ----- <u>다른 지원</u>----- ---. 제8조(포상)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

43.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
제7조(시행규칙) (생략)	제8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시행규칙과 같음)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 -----.

1. <u>북한이탈 주민</u>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1. <u>북한이탈주민</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u>사람</u> ,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 ----- ----- ----- ----- ----- <u>사람</u> (이하 “지도자”라 한다)-----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100분의 <u>7%</u>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 ----- <u>7</u> ----- -----.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u>성북구민</u> (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u>윤리의식</u> 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성북구민</u> (이하 “구민”이라 한다)----- ----- ----- ----- -----. ③ ----- ----- ----- ----- ---- <u>윤리 의식</u> ----- -----.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 <u>조제1호</u>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제8조(문화원의 사업) ----- ----- -----.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u>2조제1호</u> -----

사업 지원	-----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④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의 시 설물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u>아리랑시네센터(이하“시네센 터”라 한다)</u> 라 하고 기능 및 위 치는 <u>별표1</u> 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설치) ----- ----- <u>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 터”라 한다)</u> ----- ----- <u>별표 1</u> -----.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 시 <u>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 라 한다)</u> 은 시네센터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 춘 법인·단체 또는 <u>개인 등(이 하“수탁자”라 한다)</u> 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 -- <u>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u> ----- ----- -----개인 등(<u>이하 “수탁자”라 한다</u>)---- ----- -----.

② (생 략) 제1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네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u>별표2</u>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네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u>별표3</u>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한다. ③·④ (생 략)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기능 및 위치 [별표2]사용료 [별표3]수강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 ----- <u>별표 2</u>----- -----. ② ----- ----- ----- <u>별표 3</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 <u>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u>」 ---- -----. [별표 1] 기능 및 위치 [별표 2] 사용료 [별표 3] 수강료
---	--

49.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할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

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

---.

1. (헌행과 같음)

2. -----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3.·4. (헌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헌행 제1항과 같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헌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종 호